



PL에서의 결함의 이해 (상)

글 · 전관재 대표이사 (주)텔리넷

〈목 차〉

- 1. 들어가면서**
- 2. 결함의 개념**
- 3. 결함의 의의**
- 4. 결함의 종류**
 - 1) 제조상의 결함**
 - 2) 설계상의 결함**
 - 3) 표시상의 결함**
- 5. 결함의 판단기준**
 - 1) 표준일률 기준**
 - 2) 소비자 기대 수준**
 - 3) 위험효용 기준**
 - 4) 바커 기준**
- 6. 결함판단의 한계**
 - 1) 기술기준**
 - 2) 불가피하게 위험한 제조물**
 - 3) 피해자측의 행위**
- 7. 선의와 무과실**
- 8. 과실상계**
- 9. 독일 PL법의 시작과 발전**
- 10. 미국의 2nd Restatement of the Law (Tor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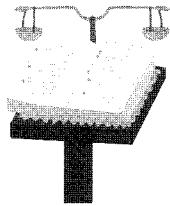
1. 들어가면서

결함(defects)이란 부족하거나 완전하지 못하여 흠이 되는 점으로, 사전적 의미로는 결점(缺點)이라고도 한다. 그리고 하자(瑕疵)란 흠이 있는 것이다. 법률 또는 당사자가 예상하는 상태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널리 쓰여진다. 하자담보, 하자 있는 점유, 하자 있는 의사표시, 행정행위의 하자 등이 그 예이다.

미국에서 확립된 업격책임은 제조자와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는 피해자라 하더라도 제조자의 과실을 입증함이 없이 그 제조자를 상대로 배상물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업격책임에 의해서도 제조물에 기인하는 손해를 입은 것만으로는 피해자의 구제가 인정되지는 않으며, 그 손해가 제조물의 결함(缺陷)에 기인한 것임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제조물책임은 절대책임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2. 결함의 개념

제조물책임에서는 제조자의 고의나 과실을 책



임요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제품에 결함이 있느냐를 책임요건으로 한다. 여기서 결함은 일반적으로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缺)한 것을 의미하고, 이는 절대적인 안전성을 요구하는 것이다.

여기서 무엇이 일반적으로 갖추어야 할 안전성인가에 대한 판단은 사회적 가치 척도와 가치 판단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상대적 개념이다. 따라서 사회가 안전성을 보다 중시할 때에는 그 안전성은 보다 강화될 것이다.

입법예를 보면 제조물책임에서 결함이란 일반인이 그 제조물에서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은 제품을 구입하는 소비자가 일반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정도를 초과한 위험으로 간주하고 있다. 유럽의 EC지침에서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사람이 당연히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을 기대하지 않는 경우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하고 있다.

또 영국도 당연히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을 갖추지 않은 경우를 결함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독일은 EC지침의 내용과 같고, 일본도 EC지침의 내용을 수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결함의 판단을 제품의 표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제품의 사용, 제품이 유통된 시기 등 모든 전후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함의 유무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3. 결함의 의의

1) 제2차 불법행위 리스트레이트먼트

제2차 불법행위 리스트레이트먼트의 제402조 A

는 <부당하게 위험한 결함상태(a defective condition unreasonably dangerous)>에 있는 제조물에 의하여 야기된 손해에 대하여 제조자는 엄격책임을 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결함이라고 하는 책임판단은 “부당하게 위험한”이라는 요건에 의하여 정의가 결정된다. 그러나 “부당하게 위험한”이라는 요건 그 자체가 불명확한 개념이므로 그것에 의하여 정의되는 결함의 개념은 역시 명확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부당하게 위험한 결함상태라고 하는 것은 일반조항적 성격을 띠는 것으로 최종적으로는 법원의 판단에 의하여 결정될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제402조는 제조물의 결함에 대한 시험을 2종으로 나누어 보고 있다. 그것은 제조물이 매도인(買渡人)의 수중(手中)을 떠날 때, 첫째 최종소비자가 미처 생각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 있었다던가, 둘째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위험한 경우 그 제조물은 결함이 있다고 하는 것이다.

첫째의 결함 시험은 물품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기대의 좌절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제조물의 위험성이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거나 적절한 위험예고를 하였거나, 또는 그 위험이 명백할 때는 손해배상이 배제되고 있다.

명백한 위험에 대하여는 언급하지 않고 있으나 대체로 법원의 판결은 위험이 명백할 때는 위험에 대한 예고는 필요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둘째의 결함 시험은 제조물이 부당하게 위험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부가조건으로 하고 있다.

이를테면 시간이 잘 맞지 않는 시계는 분명히 결함이 있는 것이나 그 결함이 신체나 재산의



유형적인 피해를 줄 위험은 없으므로 제2차 불법행위 리스트먼트가 성립된 이후로 결합상태는 위험한 것이어야 함은 요구하고 있다.

2) 통일제조물책임모델법(M.U.P.L.A.-Model Uniform Product Liability Act)

통일제조물책임모델법의 초안자들은 제2차 불법행위 리스트먼트 제402조의 결함의 정의는 원래 제조상의 결함에 한정하려고 하였던 것이며, 설계상의 결함이나 지시와 경고상의 결함에 대하여는 관심을 두고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래서 제조상의 결함에 대해서는 업격책임(M.U.P.L.A. 제104조 A)을, 설계상의 결함과 지시와 경고상의 결함에 대해서는 과실책임(M.U.P.L.A. 제104조 B,C)을 부과하려고 하였다.

4. 결함의 종류

결함은 일반적으로 ① 제조상의 결함(manufacturing defects), ② 설계상의 결함(design defects), ③ 표시상의 결함(defective warning)이라는 3가지로 크게 구분된다.

1) 제조상의 결함

제품의 원료나 부품에서 가공이나 조립과정 등에서 생기는 결함으로 설계도나 사양서에 합치하지 않는 경우이다. 이러한 제조상의 결함은 설계시방서와의 부합여부, 사용자의 만족도, 표준기준으로부터의 일탈(deviation)과 관련하여 정의되어야 한다.

2) 설계상의 결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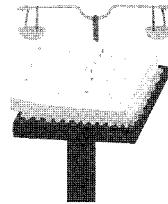
제품의 외형, 품질, 구조적 설계에 내재하는 결함으로, 설계도나 사양서대로 제품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결함이 발생하는 경우이다. 이는 제품의 안전성, 효용성, 매력성 및 가격 등을 토대로 한 제조자의 계획 및 의식적 선택의 효과로 발생한다. 설계상의 결함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 설계에 의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이 결함을 가지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제조자에 대한 파장과 영향이 대단히 크다.

제품 자체에 손해를 발생시키는 직접적인 결함은 존재하지 않지만,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사고의 손해를 확대시키는 성질의 위험이 있는 경우도 설계상의 결함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러한 위험은 “이차충돌” 혹은 “내충돌성”으로 분류되며, 자동차의 설계결함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난다. 이에 관한 최초의 판례는 1968년 제8순회구연방공소(公訴)재판소의 「라센 대 제너널모터스 사건」이다. 현재 대부분의 주(州)가 「이차충돌」에 대한 제조자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설계상 결함의 유무를 결정하는 방법으로는 ① 유사한 완제제조물과 비교하는 방법, ② 제조물의 위험성, 효용성을 비교측량하는 방법, ③ 명백한 위험의 존재 여부에 의하는 방법, ④ 산업관습이 대체가능성(代替可能性)에 의하는 방법, ⑤ 제조물의 예상수명(expected life-cycle)에 의하는 방법 등이 있다.

3) 표시상의 결함

제품의 제조자는 소비자 및 이용자에게 적당



한 사용방법을 알려주고, 부적당하게 사용하면 위험하다는 것을 경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지시 및 경고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를 지칭하여 표시 및 경고상의 결함이라고 한다.

표시와 경고가 있어도 위험의 정도를 알 수 없는 경우, 표시와 경고에 위반했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를 지적하고 있지 않는 경우가 있다. 경고문이 너무 많아서 주의를 기울이기가 어려운 경우, 글자가 너무 작아서 읽기 어려운 경우, 표현이 적절하지 못한 경우 등은 표시 및 경고상의 결함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명백한 위험에 대해서는 경고는 불필요한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여하튼 경고상의 결함문제는 제조물에 관한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한 소비자가 제조물의 효용 내지 편익(便益)과 피해의 위험을 스스로 비교하고 분석하여, 그 제조물의 사용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래서 결국에는 전문가인 제조사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였는가의 여부에 따른 문제로 귀착한다.

제조상의 결함이나 설계상의 결함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겠지만, 경고상의 결함은 실질적으로 입증이 용이하고 배심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최근에 제조물 책임소송의 소인(訴因)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는데 제조업자는 특히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5. 결함의 판단기준

제품이 어떠한 상태에 있을 때 결함이 있다고 판단할 것인지는 어려운 문제이며 동시에 대단히 중요하다. 결함의 유무를 판단하는 대표적

기준으로는 ① 표준일탈의 기준(deviation from the norm test), ② 소비자의 기대기준(consumer expectation test), ③ 위험효용의 기준(risk utility test), ④ 바커 기준 등 네 가지를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1) 표준일탈의 기준

제품이 그 통상의 상태로부터 일탈(逸脱:deviation)한 경우에 결함의 존재를 인정한다. 따라서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을 제조물의 통상의 상태로 이해하느냐 하는 것이다.

표준일탈의 기준은 제조상의 결함을 판단하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널리 이용된다. 당해제품의 설계도에 따라 제조된 다른 제품과 비교함으로써 그 제품이 통상의 상태로부터 일탈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설계상의 결함 및 표시나 경고상의 결함에 대해서는 타당하지 않다. 왜냐하면 이들의 경우에는 무엇이 제품의 통상의 상태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당해제품의 설계도를 다른 제조사의 동종제품의 설계도와 비교함으로써 통상의 상태의 일탈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업계의 관행으로부터의 일탈을 가지고 결함의 판단기준으로 하는 사례는 대단히 드물다.

2) 소비자의 기대기준

가장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는 결합판단의 기준이다. 간단히 말해서 제품이 통상적으로 소비자가 기대하는 안전성을 결여한 경우가 될 것



이다. 즉 제품이 통상적으로 소비자의 예상 이상으로 위험한 경우 결함의 존재를 인정한다. 이러한 견해는 종래 묵시적(默示的) 보증책임 이론하에서 제품의 매수인(買受人)이 기대하는 성능이나 품질이 결여된 경우에, 그것에 의해 매수인에게 생긴 경제적 손실이나 상업상의 손실에 대한 책임을 판매업자에게 지게 하기 위하여 이용되어 온 것이다.

이는 제2차 불법행위 리스트레이트먼트 제402조 A에서 엄격책임에 의거한 결함판단의 기준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후 「히튼 사건」을 비롯한 많은 사건에서 결함의 판단기준으로 법원에서 채용되고 있다.

표준일탈의 기준에서는 결함을 판단하는 주체가 제조자이지만, 소비자기대의 기준에서는 판단주체가 소비자가 된다는 점이 중요하다. 그러나 소비자기대의 기준에도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우선 소비자기대의 기준은 기준으로서의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통상적인 소비자로서 소비자의 기대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배심(陪審)은 무엇을 가지고 통상적인 소비자라고 할 것인지를 알 수 없으므로 가장 가까운 소비자인 자신을 기준으로 삼고 심지어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지식을 기준으로 소비자의 기대를 일방적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의약품 등 고도의 과학지식에 준거한 판단이 요구되는 경우 소비자는 그 제품의 안전성을 어디까지 기대할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없다는 현실성이 존재한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전문가의 감정(鑑定)을 이용하여 안전성의 정도를 다루게 되나 전문

가의 지식에 의거한 기대는 결코 「통상적인 소비자」의 기대는 아닌 것이다.

3) 위험효용의 기준

제품이 갖는 위험성과 유용성(有用性)을 비교하여 위험성이 유용성을 상회(上廻)하는 경우 결함의 존재를 인정한다. 이것은 소비자기대의 기준과 함께 법원에서 많이 채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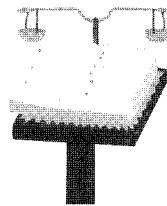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제품의 위험과 효용(效用)을 비교할 때 어떠한 요소를 고려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러한 요소는 개별 사례마다 달라서 이를 일반적으로 일괄 제시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위험효용의 기준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판단 요소를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 나타낸 것 중의 하나가 웨이드(John W. Wade)교수가 주장하는 7개 요소이다. 즉 ① 제품의 유용성과 필요성, ② 제품의 안전성과 손해발생의 개연성(蓋然性) 및 손해의 정도, ③ 대체설계의 가능성, ④ 제조업자에 의한 위험회피의 가능성, ⑤ 소비자에 의한 위험방지 가능성, ⑥ 위험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과 인지도, ⑦ 제조업자에 의한 손실분산의 가능성이라는 7개 요소를 그는 비교하여 형량(衡量)할 것을 주장하였다.

4) 바커 기준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은 1978년 바커사건 판결에서 엄격책임에 있어서의 「불합리한 위험」이라는 요건을 배제함과 동시에 새로운 결함의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즉, ① 의도된 방법 또는 합리적으로 예상가



능한 방법에 의한 제품 사용에 관하여 그 제품이 소비자가 기대하는 통상의 안전성을 결여하고 있었다는 것을 원고가 입증하는 경우,

또는 ② 제품의 설계가 장해(障礙)의 원인이었던 것을 원고가 입증하고 더욱이 ① 현재의 설계에 의해 초래되는 위험의 중대성, ⑤ 그와 같은 위험이 생기는 개연성, ⑥ 보다 안전한 대체설계의 기술적 가능성, ⑦ 개선(改善)설계에 소요되는 비용, ⑧ 대체설계에 의해 제품 및 소비자에게 생기는 악영향 등과 같은 모든 요소를 고려한 뒤에, 현재 사용중인 설계에 의한 이익이 그 설계에 본래 동반하는 위험을 상회한다는 사실을 피고가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설계상 결함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判示)하였다.

결국 바커기준은 1차적으로는 소비자기대의 기준을, 그리고 소비자기대의 기준에 의하여 결함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2차적인 기준으로서 위험효용의 기준을 채택하고 있다. 바커기준에서 특히 주목을 끄는 것은 위험효용의 기준에 관해 제품의 효용이 위험을 상회하는데 따른 입증책임을 피고에게 부과한 점이다.

이와 같이 소비자기대의 기준과 위험효용의 기준을 병용하고 있는 주(州)는 다소있지만, 위험효용기준의 입증책임을 피고에게 전환한 판례가 있는 것은 캘리포니아주와 알래스카주 오직 2주뿐이다.

6. 결합판단의 한계

결함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 한계가 되고 있는 대표적인 경우로는 ① 기술기준(state of the

art), ② 불가피하게 위험한 제품(unavoidably unsafe products), ③ 피해자측의 행위 이를테면 기여과실, 위험인수, 오용과 남용 등이 있다.

1) 기술기준(state of the art)

개발위험의 항변이라고도 하는 기술기준이라는 개념은 매우 다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는 현실적 내지 실제적인 기술적 실현 가능성 또는 과학적·기술적으로 달성 가능한 수준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다.

미국에서는 업계의 관행에 대해서는 이를 기술기준으로 인정하는 주도 있지만, 대다수의 주에서는 기수수준의 문제와는 구별하여 달리 취급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기술수준은 소비자기대의 기준이나 위험효용의 기준에 의하여 결함의 존재를 판단할 때에 고려하여야 할 요소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 채택되고 있다.

적용예를 살펴보면 1982년 뉴저지주 법원은 「석면사건」의 판결에서는 기술수준의 항변을 부정하고 경고상의 결함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1983년 동법원은 의약품 결합사례에서는 기술수준의 항변을 인정하였다. 결국 기술수준의 항변이 부정되는 경우는 석면을 둘러싼 경고상의 결합사례에 관해서 뿐이고, 설계상의 결함과 의약품을 둘러싼 경고상의 결합사례에 대해서는 많은 주(州)가 기술수준의 항변을 인정하고 있다.

2) 불가피하게 위험한 제조물

제2차 불법행위 리스트레이트먼트 제402조 A에서는 의약품이나 백신 등에 대하여 제조당시의



과학지식으로는 회피불가능(回避不可能)한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회적 유용성에 비추어 결합있는 제조물로서 취급해서는 안된다고 하고 있다.

제조물이 「불가피하게 위험한 제조물」이 되기 위해서는 그 제조물의 유용성이 위험성을 현저하게 상회하는 것이 전제하게 된다. 또한 「불가피하게 위험한 제조물」이라고 하더라도 경고가 부적절한 경우에는 제조업자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의약품 등에서는 경고의 타당성이 큰 쟁점으로 되고 있다.

3) 피해자측의 행위

(1) 기여과실의 항변과 비교과실의 항변

기여과실(寄與過失: contributory negligence)이란 피해자의 과실이 피해를 발생시킨 것을 말한다. 그래서 피해자 자신에게 부주의한 행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과실의 정도와는 상관없이 가해자에게 아무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이른바 「기여과실의 항변」은 피해자에게 너무 가혹하므로 소수의 주에서 채용되고 있을 뿐이다. 미국의 테네시주, 앨라배마주, 콜롬비아특별구, 메릴랜드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버지니아주에서는 판례상으로 인정되고 있고, 그리고 조지아주, 캔터키주,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는 제정법상(制定法上)으로 인정되고 있다.

따라서 피해자의 과실의 정도에 따라 배상금을 감액(減額)한다는 「비교과실의 항변」이 1970년대 이후 일반적으로 널리 채용되고 있다. 과실책임을 근거로 하는 경우에는 비교과실의

항변은 유효하지만, 엄격책임을 근거로 하는 경우에는 비교과실의 항변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견해도 있다. 엄격책임은 제조업자나 판매업자의 과실이 아니고 제조물의 결함 그 자체를 문제로 하는 것이므로 원고의 과실을 고려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배심원들에게 혼란을 주게 될 가능성은 부정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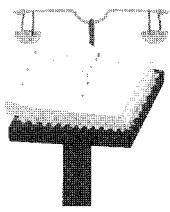
따라서 엄격책임에 대하여는 원래 과실책임에 대한 항변인 비교과실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다수의 주에서는 손실의 공평한 분담을 도모하기 위해 고려하여야 할 요소중의 하나로서 피해자의 행위를 들고 있고, 엄격책임에 있어서도 비교과실의 항변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비교과실의 항변에는 구체적으로는 다음의 4가지의 방식이 있다.

① 순수비교과실

우리나라의 과실상계와 같은 것이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과실비율분(比率分)에 대해서는 배상할 필요가 없다. 캘리포니아주, 미조리주, 뉴멕시코주, 알래스카주, 아리조나주, 콜로라도주, 코네티컷주, 플로리다주, 루이지애나주, 뉴욕주, 미시시피주, 로드라일랜드주, 워싱턴주 등에서 주로 채택하고 있다.

② 50% 방식

피해자의 과실비율이 50%이하인 경우에만 가해자는 그 책임비율에 따라서 손해를 배상한다. 뉴저지주, 일리노이주, 멜라웨어주, 하와이주, 인디애나주, 아이오와주, 매사추세츠주, 미네소타주, 몬태나주, 네바다주, 뉴햄프셔주, 오하이오주, 오클라호마주, 펜실바니아주, 오리건주, 텍사스주, 버몬트주, 위스콘신주, 와이오밍주, 버진아일랜드주 등에서 채택하고 있다.



③ 49%방식

피해자의 과실비율이 50% 미만인 경우에만 가해자는 그 책임비율에 따라서 손해를 배상한다. 아이다호주, 아칸소주, 캔자스주, 메인주, 유타주, 노스타코타주, 웨스트버지니아주에서 채택하고 있다.

④ 대·소방식(大·小 方式)

피해자의 과실이 기해자의 과실보다 큰 경우에는 피해자는 전혀 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적은 경우에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따라서 배상금을 감액한다. 네브라스카주와 사우스다코타주에서 채용하고 있다.

(2) 위험의 인수·오용·개조

제품이 지닌 위험성을 알면서도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위험의 인수」라고 한다. 「위험의 인수」의 취급에 대해서는 원래 기여과실의 원칙에 준하여 취급하였다. 노스캐롤라이나주, 앨라배마주, 콜롬비아특별구,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조지아주, 테네시주 등이 있다. 그러나 비교과실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는 주도 생겨나고 있다. 콜로라도주, 뉴욕주, 오리건주, 위싱턴주, 캘리포니아주, 아이다호주, 플로리다주, 일리노이주, 뉴저지주, 위스콘신주 등이 이에 해당한다.

소비자가 잘못된 방법으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오용(誤用)이라고 하고, 제조자의 항변으로 인정하고 있다. 오용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제조자가 의도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합리적으로 예전할 수 없는 사용방법이어야 한다. 따라서 단지 제조자가 의도하지 않은 사용방법이 있다고 하는 것만으로는 오용의 항변을 사용할 수 없다. 오용은 피해자의 배상청구를 전면적으

로 부정한다는 점에서는 기여과실의 원칙과 유사하다. 그러나 기여과실의 원칙이 피해자의 주의의무의 위반이라는 피해자의 행위에 대한 평가를 배상을 부정하는 근거로 하고 있는데 대해, 오용(misuse)은 제조물의 사용이 제조자의 예상 가능한 범위를 벗어나 있다는 사실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다르다.

제품이 인도된 후에 개조(改造)된 경우에는 개조라는 항변이 인정된다. 단 ① 개조는 중요한 것이었고, ② 개조에 의해 생긴 결함이 원인이 되어 손해가 발생하였으며, ③ 그 개조는 제조자와 판매자가 합리적으로 예전할 수 없었다고 하는 것이 전제적으로 필요하다. 개조가 있는 경우에 아리조나주, 인디애나주, 오리건주 등에서는 배상청구가 전면적으로 부정된다. 반면에 아이다호주와 유타주 등에서는 비교과실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

7. 선의(善意)와 무과실(無過失)

선의는 법률상 어떤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하고 도덕적인 의미는 포함하지 않는다. 「선의의 제3자」나「선의의 점유자」와 같은 것이다.

무과실은 과실 즉 주의의무위반이 없는 행위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민법상 선의와 함께 쓰이며, 선의인 것에 관해 과실이 없는 것을 가리킨다. 우리나라 민법에서의 「선의이며 과실없이」가 그 예이다. 물건의 점유에 관하여 점유자의 선의는 추정된다고 할 수 있으나, 그러나 무과실은 추정되지 아니한다.

8. 과실상계



우리나라 제조물책임(PL)법의 제8조는 민법의 적용에 관련된 것이다. 즉 제조물의 결함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과실책임주의에 기초로 한 민법의 불법행위책임제도를 새롭게 강화하여 결함을 책임요건으로 하는 무과실책임주제로 하는 제조물책임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이것이 민법의 불법행위책임제도의 특칙이라고 할 수 있고, 따라서 제조물책임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민법의 규정이 적용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민법에 의한 보족적인 적용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으로 과실상계(過失相計)를 들 수 있다.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피해자 또는 채권자에게도 손해발생에 대하여 과실이 있다면 그것을 고려하여 손해액을 적당하게 경감하는 것이다. 이것은 피해자가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기여한 이상, 그 부분만은 분담해야 한다고 하는 공평의 이념에서 나온 것이다.

다시 말해서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에 관하여 채권자나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는 것을 말한다.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무자나 불법행위의 가해자는 각각 채권자나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지 않으면 안되지만,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의 발생에 채권자나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경우가 있다.

이를테면 피해자가 차도를 무단 횡단하다가 차에 치어 교통사고가 난 경우와 같은 것이다. 또는 채권자나 피해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이미 발생한 손해를 보다 크게 한 경우도 있다. 부상

을 당한 피해자가 치료를 계을리하여 상처를 더욱 악화시킨 경우이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하는데 있어서 이러한 사정을 참작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민법은 채무불이행의 경우에는 배상금액을 감액시킬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배상금액을 면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이것을 준용하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제조물책임법에서는 제조자가 배상해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피해자의 고의이든 아니든 그 과실을 고려한다는 것이다.

사용자가 전기용품을 사용함에 있어서 오용(誤用 : misuse)을 했다던가, 사용상 주의사항이나 경고 등을 읽지 않고 혹은 무시하고 사용한 경우가 될 것이다. 이 경우에 고려되는 피해자의 과실은 과실책임에 있어서 책임요건으로서의 과실과 같은 것이 아니고, 주의 의무의 위반 및 태만 즉 넓게 피해자측의 부주의로 해석될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소비자의 과실은 부주의에 대한 형벌적인 비난이므로 아무리 주의를 하여도 결과의 발생을 피할 수 없었다는 경우에는 불가항력으로서 넓은 의미의 사용자의 부주의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결국 제조자가 책임 배상해야 할 것이다. 제조물의 결함을 청구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도 과실상계를 하는 것은 방해요인이 아니므로 현행 민법에 의하여 보충적으로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기타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하여도 민법의 규정이 당연히 적용하게 된다.

☞ 다음호에 계속됩니다